

무분별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미연방최고재판소는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 즉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적인 것에 관해 정의를 내렸다. 만일 매체들이 공적인 사건이나 공적인 대상들에 관해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보도를 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실제적인 범의를 지닌 기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적인 기사, 기사의 오류, 무분별한 보도 등의 문제성 있는 용어들을 판명하는 것은 중요하며, 여러 사례들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 골드워터와 긴초부르크 사례

「팩트(Fact)」란 잡지는 1964년 9~10월호에서 『보수당원의 무의식 : 베리 · 골드워터 심리에 대한 특집』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골드워터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으며 그 당시 아리조나주의 상원의원이었다. 그 잡지의 기사는 골드워터의원을 「편집병자」로 묘사하고, 또한 골드워터의원이 『그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골드워터의원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그의 정적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골드워터의 내부 신념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기사는 정신의학자들의 동의없이 「팩트」 잡지의 편집장인 긴초부르크(Ginzburg) 자신이 판단하여 내린 결론에 근거하여 보도했던 것이다. 「팩트」 잡지는 또한 정신의학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후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골드워터의원이 심리학적으로 대통령직에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 이의 결과를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자 골드워터의원은 「팩트」 잡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팩트」잡지가 골드워터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에게 1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7만 5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계기사가 무분별하고 잘못된 보도라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정신적 질환에 대한 잘못된 비판은 그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뉴욕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팩트」 잡지가 이에 대해 또다시 항소를 제기하자 순회항소심공판이 열렸다. 순회항소심은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반송 새로운 공판을 열도록 결정했다. 그 이유로써 순회재판관인 워터맨(Waterman)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골드워터에 관한 기사는 핫 뉴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잡지의 편집인도 기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리적인 조사와 보도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골드워터에 대한 명예훼손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잡지 편집인이 부주의했을 따름이고 조사에 대한 기술이 미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잡지 편집인은 전문적인 정신의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골드워터상원의원의 내적 심리상태에 관한 전문적인 논평을 가하지도 않았고, 조사의 결론에 관해서도 정가를 내리지 않았다. 잡지사가 범한 실수는 타당성이 부족한 조사기술을 갖고 조사를 실시했던 데 있다. 또한 그 조사의 결과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골드워터 상원의원을 공격할 계획이 있을 가능성 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는 단지 잡지가 명예훼손적인 논평들을 공표할 때 실제적인 범의를 갖고 동기화되었을 것이라는 가정과, 잡지사측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인 줄 알면서도 공표하게 되었다는 1심판결의 주장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 항소인이 직접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거부하며 새로운 공판을 열 것을 정결한다』 그러나 연방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순회 항소심의 사건이송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를 보였다. 연방최고재판소의 블랙 (Black)재판관과 더글라스(Douglas)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오늘날 우리는 수정헌법 제 1 조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이 사례는 예전에 다루었던 어떤 사례보다도 무분별한 보도가 더욱 큰 피해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사건은 두 가지 특별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다. 첫째, 이 소송사건은 미국대통령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이다. 우리시대에 있어서 최고기관은 선과 악에 대해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중일 것이다. 따라서 공중은 대통령직에 오를 사람에 대해 그의 적합성과 개성에 관해 철저하게 알 권리를 행사할 절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나게 무분별한 보도, 즉 사실이 아닐지도 모를 주장들과 심지어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주장들은 신중히 보도했어야만 했다. 둘째,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무분별한 보도를 다루는 재판은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1심판결과 항소심에서 내린 결정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논쟁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순회항소심 결정은 의심의 여지없이 골드워터상원의원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대통령후보를 비판한 「팩트」 잡지의 기사가 무분별한 보도를 한 사실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적이건 개인적이건 간에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일이 존재해서는 안된 다. 본인은 수정헌법 제 1 조가 절대적으로 명예훼손을 금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는 골드워터 상원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하는 것이다. 골드워터의원이 비록 변론을 하지 못하고 특별한 피해 부분에 대한 증인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피해가 존재할 경우 1 달러의 명목상 손해배상과 징벌적손해배상이 전액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긴츠부르크와 「팩트」 잡지는 골드워터상원의원에게 7 만 5 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무분별한 사실적 보도를 한 「팩트」 잡지사는 골드워터상원의원에게 1 달러의 명목상 손해배상금과 7 만 5 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다.

II. 스노우덴과 펄 · 리버 방송국

1971 년에 결정을 본 루이지애나 사례는 라디오방송국이 녹음장치의 활용 없이 「초청인사쇼」를 생방송할 때에 어떤 위험이 따르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보가루사(Bogalusa)의 WBOX 방송국은 「초청 인사쇼」를 생방송 하였는데 아나운서는 청취자들이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초청인사들 자신이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 특별히 이름이나 장소 등을 밝히지 않고 진행하였다. 1968 년 4 월 2 일에 방송된 프로그램에는 피자가게 주인과 마약중독자인 초청인사가 한조가 되어 출연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출연하였다. 아나운서는 청취자들이 이들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출연자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힌트를 제공하였다. 아나운서는 『뉴맨(Newman) 박사가 처방을 하고 게리 · 스노우덴(Guerry Snowden : 약국주민)은 처방약을 조제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아나운서는 청취자들이 출연자들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반복해서 말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난 후 보가루사 경찰국에는 그 화제의 인물과 마약주문에 관한 항의가 쇄도했다. 열화에 못이겨 경찰당국은 4 월 4 일에 허위 유포된 무고할 개인들의 신상에 관해 해명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 방송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스노우덴과 뉴맨박사, 그리고 피자가게 주인인 블랙웰(Blackwell)은 각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결과 그들에게 각각 4 천달러, 5 천달러, 그리고 2 천 5 백달러를 지급토록 결정했다. 방송국 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은 방송국의 행위가 사실과 오류에 대해 무분별한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중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초청인사가 초대되었으나 라디오방송은 결국 무고한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다. 방송국은 익명의 소스로부터 명예훼손적인 사항을 제공받고 이를 공표할 때에는 신중하게 타당성과 사실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방송과정이 청취자들이 원하는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초청을 하고 있을 경우 특정인이나 단체에 관한 사항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익명의 소스로부터 제공받은 사항을 일정한 심의과정이나 녹음장치의 활용도 없이 직접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명예훼손을 야기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나운서가 공표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며 이러 한 개인적인 추측에 근거한 단순한 주어나 추측의 공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나운서의 의도는 그가 선택 한 초청 민사에 관해 어떠한 개인적인 주장이든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때 처음 방송을 하는 초보자라면 어떤 사항에 관해서도 공표할 수있는 기피와 특권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초청인사의 익명성을 밝히는 계기를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사항까지 밝히게 되므로써 명예훼손을 범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법정은 방송국이 테이프 · 레코더와 녹음방송장비의 활용으로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었다고 확신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송은 피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아나운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익명성을 밝히는 진행을 끝내도록 해야 했다. 특히 출연자 자신이 소개를 원하지 않았다면 인터뷰를 끝내고 다음 출연자와의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나운서는 출연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은근히 요구하고, 출연자의 신분이 어느 정도 밝혀졌을 때여야 순서를 끝냈다. 이와 같이 아나운서가 진행한 방법은 사실적 주장이 오류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무분별한 공표를 할 명예훼손적인 방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나운서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할 진이라 할 지라도 개인적 사항에 관한 무분별한 공표는 그의 의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모든 표현수단에 대해서 무분별한 공표를 할 경우, 이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사건은 증명되지 않은 사항, 즉 단순한 소문이나 증문에 근거한 방송의 사실적 공표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지급토록 결정한 1 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판시한다』

III. 에어라이 재단과 워싱턴 이브닝 스타지

1972 년 버지니아법정은 에어라이(Airlie) 재단의 제정문제에 관해 「스타」지의 기사가 무분별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결했다. 「스타」지의 기자인 로버트 · 월터스(Robert Walters)는 동재단이사회의 한 사람인 히그스(Higgs)씨의 말을 인용하여 제정문제에 관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히그스씨는 에어타이재단의 재정이 국방성과미정보국을 포함한

정부기관들에 의해 비밀리에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타」지의 기사는 2 일간이 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하였는데 보도기사 중 일부는 히그스씨가 제공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는 후 에어라이 재단측은 「스타」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은 그러한 보도행위에 대해, 「스타」지는 에어라이 재단에게 41 만 9 천 8 백 달러를 배상하고 재단의 창설자인 헤드(Head)씨에게는 10 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타」지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은 1 심판결을 유지했다. 단,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각기 5 만 달러와 1 만 달러로 줄여서 배상토록 결정했다.

「스타」지의 기사가 무분별한 보도를 하게 된 한가지 결정적인 사항은 「스타」지의 편집장인 뉴볼드 · 노이스(Newbold Noyes) 씨가 그의 개인적인 친구인 미정보국장 리처드 · 헬름(Richard Helms)씨를 저녁에 만나 개인적인 이야기 를 듣고 이를 토대로 추측기사를 보도했다는 점이다. 헬름씨는 노이스씨를 만났을 때 「스타」지가 보도한 사실에 관해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노이스씨는 헬름씨와의 대화 속에서 히그스씨가 주장한 내용 (에어라이 재단의 재정적 비위사실)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가를 은밀히 확인하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기사는 재단측의 강력한 부인을 강조하면서도 은근히 이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반복해 실었다. 특히 이날 기사는 「정부기관은 제정지원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미정보국이 제정지원에 관해 변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또한 동재단의 1965 년도 지출 (49,684 달러)과 수입(561,205 달러) 이 커다란 모순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기자가 제시한 통계숫자는 수입과 지출의 엄청난 차이를 지적하므로써 모순을 알리려고 했으나 실제 지출액은 50 만 달러였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실제 보도내용과 달랐고 오히려 기사가 모순을 범하였다. 이러한 허위보도에 따라 법정은 기자의 무분별한 사실보도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스타」지가 보도한 사건의 내용은 모순되며, 일방적인 비방에 중점을 둔 기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고 「스타」지의 기사내용은 정보를 제공한 히그스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라이 재단에 대해 무분별하게 보도한 「스타」지의 기사는 잘못이라고 판시했다』